

제2차의회운영위원회
2014. 10. 24.(금)09:30

충청북도의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의회운영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이홍신

「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이숙애 의원 외 6명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4년 10월 16일
- 회부일자 : 2014년 10월 16일

3. 제정이유

- 충청북도의회의 교섭단체 간 창구 일원화로 도의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, 그 밖에 상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임절차 등 교섭단체 구성에 따라 운영상 필요한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제명을 「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」에서 「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함(안 제명)
- 충청북도의회의 교섭단체 구성 근거를 규정함(안 제2조)
-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 선임 또는 교체선임 시,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교체선임 하도록 함(안 제10조)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,
그 밖에 상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임절차 등 교섭단체 구성에 따라 운영상 필요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.

-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
 - 안 제2조에서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은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또는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하도록 하였고,

 - 안 제10조에서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교체선임 할 수 있도록 하고, 협의가 안 될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을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위 개정조례안의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서 위임 규정은 없으나, 지방자치 고유사무로 보아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.

- 다만, 안 제10조의 상임위원장 선임과 관련된 조항은 상임위원장을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, 전국 최초로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교체선임 하도록 개정하였음.
- 이는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위원들의 상임위원장 선임 기회를 어렵게 하는 면도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.